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30 | 2026.5.4 (2026.4.27~2026.5.3)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가치와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공공부문부터 퇴직금 회피 등을 위한 364일 계약, 1년 미만 반복 계약 등 불공정 고용관행을 근절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포함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6~'35)**」을 발표하였습니다.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라 향후 10년 나노기술 발전의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를 담아 5년마다 수립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입니다.

【입법(행정)예고】

<국방부>는 국가 등이 소유한 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승인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개발성과물 중 수출용 수리부속의 기술이전에 대한 자체승인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을 상향하여 법 위반의 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주식양수도 방식을 통해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인수·합병 주체로 하여금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6인)**」,

300억 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각하려는 경우 등에는 국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영역의 분리 도급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CDN 사업자를 포함시키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

비수도권 및 접경지역에 대해 산업 여건과 중소기업의 집적도를 고려하여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지역주력산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산업 생태계 내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 맞춤형 인력 양성, 판로 개척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

기업승계자를 발굴·육성하여 후계자 부재 문제를 해소하고, 승계 이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사회적 자산인 중소기업의 계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경영의 계속성 강화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이철규의원 등 12인)」 ,

금융회사 등의 출연요율 하한을 연 비율 1천분의 2로 정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사항의 일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하고 환자치료 실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

민간기업에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

공간정보 갱신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갱신 의무’를 명확히 법률에 신설해 도심항공교통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미래 항공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욱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과방위>, <기후위기특위> 등에서 법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고용노동부) 6
- 「제6기 나노기술중합발전계획('26~'35)」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9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부) 9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후에너지환경부) 10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후에너지환경부) 1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11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1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방부) 12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해양수산부) 12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정거래위원회) 1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정거래위원회) 13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정거래위원회) 13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정거래위원회) 1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15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4인) 15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16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16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17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6인) 17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 18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 18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19

-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19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20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의원 등 10인) 20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의원 등 10인)..... 21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의원 등 10인)..... 21
- 기업경영의 지속성 강화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이철규의원 등 12인) 21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의원 등 10인) 22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22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6인)23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23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23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2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9인) 24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의원 등 14인) 25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의원 등 24인) 26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26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2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ESG]** 2026년 주목해야 하는 ESG 규제 (8)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 **[건설/부동산]** 월간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2026년 정기주주총회 리뷰] 제3호 : 이사 선임과 보수 승인 -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 증가 및 임원 보수 구조의 변화
- **[소송]** 재판소원 제도 도입 3. 해외 재판소원 인용 사례
- **[방송통신(TMT)]**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및 시사점
- **[건설/부동산]**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이후 적법하게 이를 철회한 사실이 없다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무효확인 청구를 방어한 사례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 **[금융]** 월간 기업 금융분쟁 뉴스레터
- **[국방획득/방위산업]** 방산업체를 대리하여 함정 기본설계 계약에 부과된 지체상금의 전부 면제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변경계약 체결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추가 인정받은 사례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 - 1년 미만 계약 원칙적 금지, 채용 사전심사제 내실화 등 공정한 고용관행 확립 - 고용 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공정수당, 적정임금 등 처우개선	2026-04-28
-------	--	------------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하였음

이번 대책은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가치와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공공부문부터 퇴직금 회피 등을 위한 364일 계약, 1년 미만 반복 계약 등 불공정 고용관행을 근절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포함하였음

[노동가치·고용불안정성을 제대로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 지급]

① 1년 미만 기간제 공정수당 도입('27년)

-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생활임금 평균<최저임금의 118%>)의 10~8.5%의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공정수당 도입
- 단기계약일 때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하여 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기 계약을 유도할 계획

② 공공부문 적정임금 예산 반영('27년)

- 공공부문 내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가치에 상응하는 보상 지급을 위해 기간제 노동자가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적정임금 수준은 생활임금의 평균(최저임금의 118%)로 설정하고, 월 정액임금이 적정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가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27년 예산안에 일시 반영

③ 복지3종·수당 등 처우개선 논의('26.5.~)

- 임금 뿐만 아니라 기간제 노동자의 복지3종(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수당 등 처우에 대해서도 실태를 살펴보고,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논의 추진
- 중앙부처 동일·유사직종 비정규직 노동자 간 수당 등 차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추진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관행 확립]

① 공정한 고용원칙 확행 및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내실화('26.5.)

-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퇴직금 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 등 근절을 위해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

-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이하 ‘사전심사제’)를 거쳐 업무 특성, 계약기간, 인원 등 필요성 심사 후 예외적으로 채용

② 초단시간 남용 방지('26.5.~)

- 공공부문에서 기간제 초단시간 노동자(주 15시간 미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을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통해 필요성 여부를 심사
-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 등 추가비례 지급을 조건으로 하여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조치

[처우개선의 지속성 담보]

① 정기 실태조사 실시

- 공공부문 종사 비정규직, 공무직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인원, 직종, 계약기간, 임금체계 등을 조사하고, 이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향후 관련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실태조사 과정에서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의 364일 계약 등 불공정한 관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1년간 근로계약을 보장하도록 지도하는 등 불공정 관행 지도·점검도 병행할 예정

②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및 근로감독

- 대책의 책임있는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합동평가 등에 반영을 검토
- 매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실태점검 및 개선을 지도하고,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TF」를 정기 운영하여 대책의 이행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

③ 온라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상담센터 운영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불합리한 처우나 고용관행 등을 겪었다면 누구나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 설치('26.4.6 개소)
- 상담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 등을 통해 조치하고, 불공정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지도 등 필요한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6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6~'35)」 발표

- 나노분야 최초 연구 촉진, 기술로 성장하는 나노융합산업 육성, 나노기술로 AI·양자 대전환 물리적 기반 구축 추진

2026-04-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6~'35)」을 발표하였음.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라 향후 10년 나노기술 발전의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를 담아 5년마다 수립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임. 이번이 6번째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비전 및 전략

이번 계획은 “2030년, 세계를 이끄는 나노기술 3대 강국으로 도약”을 비전으로, ① [연구개발] 나노 융합으로 글로벌 기술 선도, ② [산업화] 기술로 성장하는 나노융합산업 육성, ③ [AI 양자 융합] AI 양자 대전환 나노 융합 확대, ④ [생태계] 지속가능한 나노 혁신 생태계 조성 4대 전략을 제시하였음

2. 중점 추진 과제

① [연구개발] 제로 투 원, 세계 최초로 향한 도전

- 미래 학문과 신산업을 개척할 나노과학 최초연구에 투자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주력산업 고도화 뿐 아니라 우주 항공 등 신산업을 견인할 나노기술 개발을 추진
- 새로운 학문과 산업을 여는 독창적 원천기술 확보, 창의 도전적 연구문화 확산을 위해 나노과학 5대 분야 최초연구를 지원하며, 관련 사업 본격 추진에 앞서 올해는 나노소재기술개발 사업 내 시범과제를 선정하여 지원
- 에너지 대전환, 탄소중립, 질병 등 인류 공통의 난제 해결을 위한 나노기술 기반 임무 중심 연구개발 추진

② [산업화] 나노소재기술, 더 빠르게 산업으로

- 실험실의 성과가 산업으로 빠르게 이어지도록 수요기업 초기 참여형 상용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나노소재 분야 정부 연구개발 과제 우수성과의 조기 사업화를 위해 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간 이어달리기를 적극 추진
- 타 분야 대비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나노소재 기술 사업화의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나노소재 신공정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기획 추진

③ [AI·양자 융합] 나노기술로 AI 확산 및 양자 상용화 지원

- 초거대 AI 인프라를 위한 나노소재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피지컬 AI 구현을 위한 지능, 지각, 구동 핵심 나노기술을 확보하여 AI 확산의 물리적 기반 제공
- 소재 다중 물성 통합 예측 AI 개발과 자율실험실 확산을 추진하고, 연구 데이터 공유 활용 기반을 조성하여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나노소재 연구개발 활성화
- 축적한 반도체 제조 역량을 활용해 세계 1위 양자 칩 제조국 도약을 위한 양자 칩 제조 공정 기술을 확보하고, 큐비트 구현 신물질 연구를 지원하여 양자기술 상용화 뒷받침

④ [생태계] 나노기술 르네상스를 위한 기반 확충

- 전국 나노 인프라를 전문 분야 및 지역별로 특화 체계화하고, 공공 나노 팹 인프라 공정 측정 데이터의 공유 활용 기반을 조성하며, 소재 지식과 AI 활용 능력을 겸비한 융합 인재 양성
- 나노물질과 융합제품의 안전성 연구 및 평가 기술개발, 첨단소재 표준 선점을 위한 국제 표준화 활동 지속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4-28 시행

불법 스팸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기 등의 민생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송자격에 대한 인증을 받도록 하며,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면서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관한 규정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 준수 여부 점검 절차, 전송자격 인증의 신청절차와 인증의 취소기준, 금지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 차별 지급의 유형,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2026-10-29 시행 예정
---------	-------------	------------------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신탁받아 사용료를 징수·분배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이나 현행법은 영업 허가 이후 운영에 대한 주기적 점검 체계와 회원의 의사결정 참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충분하지 아니하고, 그 운영과정에서 관리·감독의 실효성과 조직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며, 회원의 권리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산업통상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2026-04-28 시행
-------	----------------------------------	---------------

산업환경의 변화 및 신산업의 입지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운영할 수 있는 지식산업의 범위에 녹음시설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및 온라인 교육 학원 등을 추가하고, 정보통신산업의 범위에 뉴스 제공업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등을 추가하며, 산업단지 밖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해소를 위해 오피스텔을 입주업체 생산 활동 지원시설로서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내 사업자 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업종 배치계획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는 기존 입주기업체 및 공장 등의 임차인이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추어 업종명 및 분류번호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개정령

2026-04-29 시행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한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배출권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 보호 및 지급 규정을 신설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배출권 거래 등에 관하여 시장 참여자 등을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71호, 2025. 10. 28. 공포, 2026. 4. 29. 시행)됨에 따라,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의 지정 취소 기준, 예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시장 참여자 등에 대한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배출권의 추가 할당 사유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2026-04-30 시행

공급망 차질 등으로 수급위기에 처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국내 제조업의 안정적인 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쟁, 국제분쟁,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 등의 사유로 국외로부터 화학물질의 수입 또는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등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제출해야 하는 등록신청자료 중 물용해도, 급성경구독성, 어류급성독성 등 일부 사항에 관한 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되,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4-28 시행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관한 국내외의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유인을 높이기 위하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운용비율 상한을 확대하고 동일 종목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허용하는 등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4-28 시행

군 장병 등에 대한 금융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내실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교육협의회의 공무원인 위원을 지명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국방부장관을 추가하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등'의 산정 범위를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국방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4.29. ~2026.06.08.

국가 등이 소유한 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승인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개발성과물 중 수출용 수리부속의 기술이전에 대한 자체승인 범위를 확대하여, 방산수출 확대에 따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리부속 및 방산물자를 방산업체가 신속히 제작·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방위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또한, 국가 등이 소유한 개발성과물의 관리에 대한 업무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기술품질원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영하여, 개발성과물의 활용·관리 업무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 문의처 : [국방부 국방연구개발기획과 \(전자우편 : 2seung2@korea.kr\)](#)

해양수산부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4.28. ~2026.06.09.
-------	----------------	-----------------------------

일반항로에 대한 운항명령 손실보상금 근거 마련,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대상 확대 등 현행 시행령을 보완하는 한편,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폐지하는 해운법 개정('25.4.22.) 반영, 상위법 인용 오류 수정 등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① 일반항로에 대한 운항명령 손실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안 제12조)

- 해운법 제16조에 따라 손실보상금 결정 등 세부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은 보조항로 운항명령에만 국한되어 있어, 보조항로 이외의 일반항로 운항명령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조항로”를 삭제하고자 함

②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납부방법 폐지 (안 제12조의5)

- 해운법 제22조의2(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및 제22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이 폐지('25.4.22.)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③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대상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추가 (안 제23조의2제3호)

- 외항선사와 그 이용 화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적용대상에 내항선사를 추가하여 선화주 상생 문화 정착 도모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전화: 051-773-5733, 팩스: 051-773-5789\)](#)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4.29.
~2026.06.08.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제도의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로 변경하고, 지정심사기관이 사업자 부담 비용을 지정 심사비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444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상의 관련 용어를 수정하고, 사업자가 지정심사기관에 직접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되 지정심사기관은 그 수입의 사용계획과 실적을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정부위원 지명 요건을 삭제하고 민간위원을 국무총리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전화: 044-200-4409, 팩스: 044-200-5228)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4.30.
~2026.06.09.

반복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을 상향하여 법위반의 억제력을 제고하고, 과징금 감경 사유를 정비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①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부과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함 (안 별표4의2)
- ② 단순과실로 인한 과징금 감경 규정의 삭제로 과징금 산정 시 가맹본부의 고의, 과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게 됨에 따라, 가맹본부의 ‘고의, 과실’에 따른 조정을 ‘조사협조’ 등에 따른 조정으로 용어 개정 (안 별표4의2)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전화: 044-200-4994, 팩스: 044-200-5226)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4.30.
~2026.06.09.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가중 규정을 상향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함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에 따른 1차 조정 범위를 기본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서 “100분 100”으로 확대하여 과징금 가중 한도를 50%에서 100%로 상향 (안 별표2. 2.)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전화: 044-200-4952, 팩스: 044-200-4977\)](tel:044-200-4952)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4.30.
~2026.06.09.

대규모유통업자의 반복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가중 상한을 상향하여 법 위반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함 (안 별표1)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전화: 044-200-4964, 팩스: 044-200-5227\)](tel:044-200-496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2026-04-30 발의

최근 3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독립이사 비율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자기주식 소각 원칙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장치가 도입되었음

그런데 이사 선임은 주주총회의 핵심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상장회사가 이사·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 기본적인 사항만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주주가 후보자의 독립성과 적격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기에 한계가 있음. 특히 독립이사의 경우 회사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독립성 판단 근거, 겸직 여부 등 주주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독립이사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이사·감사 후보자에 관한 공시사항에 회사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독립성 판단 근거, 겸직 여부 등 후보자의 독립성 및 이해관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주주가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독립이사 제도 강화 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542조의4)

정무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4인)

2026-04-27 발의

현행법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휴면예금 및 실기주 과실(이하 “휴면예금등”이라 한다)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자율적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휴면예금등에 사실상 소멸시효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휴면예금등의 출연을 유도하고 해당 금원의 원금은 보전하되 이자수익 등을 활용하여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파산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 늘어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받는 휴면예금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휴면예금등의 원금을 포함한 보다 폭넓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휴면예금등에 대해서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무한정 보호하는 것은 민·상법 전반에 적용되는 소멸시효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등 출연을 의무화하고 소멸시효 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유하는 일정 수준의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휴면예금 등의 원금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원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운용을 통한 서민 경제 활성화와 포괄적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안 제40조, 제45조, 제45조의2 등)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2026-04-28 발의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와 출입검사가 개시된 이후에 발생하는 자료 은닉·폐기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자료의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와 출입검사가 개시된 이후에 발생하는 자료 은닉·폐기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이후 관련 기관 조사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협조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안 제72조제4호·제5호 신설 등)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2026-04-28 발의

국내 상장회사의 인수·합병은 대부분 기존 지배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형태의 주식양수도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현행 관련 법률은 흡수·신설 합병 및 영업양수도 방식에 대해서만 일반주주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주식양수도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일반주주 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는 EU, 영국 및 일본과 같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이미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현황과는 괴리가 있으므로 일반주주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주식양수도 방식을 통해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인수·합병 주체로 하여금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피인수·합병기업의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약탈적 인수·합병을 예방하되, 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인수·합병의 순기능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제반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2026-04-29 발의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 로봇 청소기, 지문·안면인식 도어락, 스마트 가전 등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이 국민 일상 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그러한 제품에 개인정보 보호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여, 우수 제품 등의 개발과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 운영에 필요한 심사 절차, 사후관리, 인증 제품의 보급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제 조사의 자발적 노력과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관련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함 (안 제32조의 3 신설 등)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2026-04-30 발의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가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을 부과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표명령은 보호위원회의 재량에 불과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분 결과 및 재발방지 조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실정임. 이로 인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인지하더라도 이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떠한 제재를 받았는지, 어떠한 개선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접 처분 결과 및 조치사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표의 내용 및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알 권리 및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66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6인)

2026-04-27 발의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는 기본세율 60원/kg, 탄력세율 42원/kg을 적용받고, 유사한 난방연료인 LPG는 기본세율 20원/kg, 탄력세율 14원/kg을 적용받고 있음. 이에 따라 탄소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천연가스가 오히려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개별소비세는 본래 사치성 소비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도입된 세목이나, 2026년 현재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85%에 달해 천연가스는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주된 난방연료로 자리 잡았음. 그럼에도 현행 세율체계는 과거 에너지 소비구조를 반영한 채 유지되어 현행 소비 실태와 민생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특히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및 환율 변동성 확대로 국내 가스요금 안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조제2항제4호)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

2026-04-27 발의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국유재산이 감정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처분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이른바 ‘혈값 매각’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매각 대상 선정 및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사전 심의와 국회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은 무분별한 민영화와 이에 따른 정부 자산의 가치 절하로 이어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30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국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민간 전문가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국유재산 처분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 모두의 자산인 국유재산의 매각 과정 전반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감독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의2, 제26조)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

2026-04-27 발의

최근 일부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과정에서 감정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처분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자산 매각 절차의 적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매각 대상 선정 및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사전 심의와 국회의 관리·감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자산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 절하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3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 자산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표함으로써 공공기관 자산의 매각 과정 전반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감독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신설)

행정안전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2026-04-27 발의

현행법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데이터베이스 내 값의 오류나 누락 등 내용의 정확성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데이터의 가동률이나 응답시간 등 실질적인 제공의 안정성을 관리할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공공기관이 시스템 개편이나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공공데이터 제공 방식을 사전 예고 없이 변경하거나 서버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데이터를 연동하여 활용하는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장치가 부재함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안정성 기준 충족 의무를 신설하여 그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운영실태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데이터 제공을 중단하거나 방식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공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데이터 제공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안정적인 데이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안 제26조의2 신설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2026-04-28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의 경우 다른 업종의 용역과 분리하여 도급할 의무가 없어,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은 다른 공종의 용역과 일괄 도급되어 소방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 업체들은 수주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실정임. 수주 기회 상실에 따른 경영상황의 악화는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의 위축과 관련 분야에서의 책임성 및 전문성 저하로 이어져,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국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의 분리 도급을 통해 관련 업체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고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설계의 내실화와 책임 감리 실현 등 소방시설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발전과 국민 안전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21조 및 제37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2026-04-28 발의

2024년 7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MS Azure) 장애로 국내 항공·게임 등 일부 서비스에서 접속 지연 및 운영 차질이 발생한 바 있으며, 2025년 11월에는 클라우드플레어 시스템 장애로 챗GPT, 엑스(X), 페이스북 등 주요 웹사이트에서 일시적인 접속 오류가 발생하는 등 CDN·클라우드 사업자의 장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부가통신서비스의 일종인 CDN(Content Delivery Network)은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어, 해당 서비스의 불안정은 특정 기업을 넘어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및 국내 트래픽 비중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서비스 제공의 핵심 기반 역할을 수행하는 CDN 사업자는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CDN 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내에 제공되는 클라우드 및 콘텐츠 전송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도모하는 한편, CDN 서비스 장애 발생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의7)

문화체육관광
위원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의원
등 10인)

2026-04-29 발의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건전한 게임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게임물의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예방 및 구제, 유해한 게임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나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 의지를 갖더라도 관련 사업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과 이용자의 권익보호 사업에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게임 이용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장애인 친화적 게임문화를 조성하며 게임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4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026-04-28 발의
최근 급격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주체인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 촉진을 위한 일반적인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형성된 특정 산업 분야 내 중소기업 간의 협업이나 가치사슬 고도화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국가균형발전 및 장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비수도권 및 접경지역에 대해 산업 여건과 중소기업의 집적도를 고려하여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지역주력산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산업 생태계 내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 맞춤형 인력 양성, 판로 개척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아울러, 지역별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지원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시도별 지역중소기업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지역전담기관이 지역 산업 분석부터 기업 지원에 이르는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 중심의 자립적 성장 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2026-04-28 발의
2026년 8월 11일 시행 예정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반도체산업의 범위에는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 등을 설계 또는 제조하는 산업, 외부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설계자산을 위탁받아 제조·공급하는 산업 등이 포함됨. 그런데 비메모리반도체에 해당하는 전력반도체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변환·제어하는 반도체로서 전기자동차산업, 인공지능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반도체인데, 법률에 ‘전력반도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 지원의 근거가 다소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반도체산업에 전력반도체를 설계 또는 제조하는 산업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력반도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호가목)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업경영의 지속성 강화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이철규의원 등 12인)	2026-04-28 발의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국내 중소기업 경영자들 역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자녀의 승계 기피 등으로 구조적인 후계자 부재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친족 중심 가업 승계에서 벗어나 친족 외의 자에게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승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가적·사회적 자산인 중소기업이 승계에 실패하여 소멸로 이어질 경우 우수기술의 활용 단절과 고용 감소 등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국가 성장동력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러한 문제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승계자를 발굴·육성하여 후계자 부재 문제를 해소하고, 승계 이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사회적 자산인 중소기업의 계속성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2026-04-29 발의

현행법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하여 금융회사등이 대출금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도록 하면서, 그 출연요율은 연 비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에 관하여 법률상 상한만 두고 있어 실제 출연요율이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거나 하향 조정될 수 있으므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와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지속적인 보증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 하한을 연 비율 1천분의 2로 정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7조제3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2026-04-29 발의

현행법은 정부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사업화 지원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단계를 아우르는 수소산업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수소산업 관련 기술력 또는 제품 개발실적을 보유하였거나, 업종전환 또는 창업을 통하여 수소전문기업이 되고자 하는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사업화지원,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6인)	2026-04-29 발의
---------------------	---	---------------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 시험·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과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술의 실증시험·성능검증 촉진이나 전문기술인력 양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요 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를 통한 협력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관련해 석사·박사 취득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실증시험, 성능검증 등을 위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를 지원하고,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과정 취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보건복지위원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2026-04-28 발의
---------	--	---------------

최근 인체에서 유래된 다양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목적의 연구 및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환자 치료연구 성과가 도출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세포치료연구에 대하여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인간배아줄기세포와 같이 이미 수립되어 실시기관에 공급되는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환자치료 연구승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첨단의료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환자에 대한 치료 기회 확대의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이미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군에 따라 환자치료 실시기관을 한정하고 있어 법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사항의 일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하고 환자치료 실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활성화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2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 신설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2026-04-28 발의
------------------	--	---------------

현행법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소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회수기간이 장기인 특성이 있어, 수소에너지 발전사업의 제약 요인 중 하나로 입지 확보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최근 이와 같은 이유로 재생에너지의 경우에는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100분의 80 범위로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가 추진되고 있음

이에 수소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부지의 수소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함으로써 수소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18조제5항)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2026-04-29 발의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등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정책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되고 있는 노동시장 위축 등에 따른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며, 취업의 문이 좁아지고 좋은 일자리를 얻기도 어려워지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청년고용 촉진 확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정적인 청년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상향조정하고,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또한 민간기업에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촉진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9인)

2026-04-29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2005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도입률이 장기간 정체 상태임.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제도 도입에 따른 유동성 제약 부담, 운용 전문성 부족, 행정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운영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 이를 완화하고자 2022년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도입 확대와 기금 운용 활성화 측면에서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합의 취지를 반영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 중소기업을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2028년 7월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나, 영세·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 납입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산정 기준이 왜곡되는 과소·불완전 적립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의 납입내역을 근로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하며, 기금 회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중소영세사업장의 가입률 제고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확산을 위한 운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

2026-04-29 발의

현행법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열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견이 배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는 미리 공청회,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와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9조의2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24인)

2026-04-30 발의

최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산업의 성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전력망 구축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자원 조달의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 선납제도를 도입하여, 전기사용자가 일정 기간의 요금을 선납할 경우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이를 통해 확보한 선수금을 전력망 확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 전기요금 선납에 따른 할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전기사용자에게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6조 제1항)

국토교통위원회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2026-04-27 발의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란 위치정보 및 기상·소음 정보 등 도심항공교통에 필요한 정보로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데이터 기반 인프라임. 따라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 유지가 UAM 운항 안전 확보와 사업활성화를 위한 필수요소로서 매우 중요

이에 현행법은 관계기관이 공간정보 변경사항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보된 내용을 실제 공간정보에 즉시 반영하는 규정은 임의 규정에 머물러 있어 신속한 정보 최신화 및 서비스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간정보 갱신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갱신 의무’를 명확히 법률에 신설**해 도심항공교통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미래 항공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안 제18조제4항)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과방위	정보통신방송 법안소위	5/6(수) 15: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5/7(목) 10:00	- 법안 의결
국토위	전체회의	5/7(목) 10:00	- 행정수도 특별법안 관련 청문회
기후위기특위	탄소중립기본법 법안소위	5/7(목) 10:00	- 법안 심사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5/6(수) 10:00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위상과 교통기본법 반영 과제	염태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5/6(수) 14:00	남북 에너지 공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국회 남북 에너지 토론회	이용선·이학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2간담회의실
	5/6(수) 14:00	춘천~원주 고시를 위한 강원도의 전략: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허영·송기현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5/6(수) 14:00	외투기업 철수 집단해고 3년 노동자의 삶과 고용을 묻다	박해철·이학영 의원실 등	국회 본관 220호
	5/7(목) 13:00	에너지 전환, 시장을 넘어 공공으로	김주영·박홍배 의원실 등	의원회관 4간담회의실
	5/8(금) 15:00	국제항공 탄소 감축 준비 점검과 대응 과제	김성희 의원실	의원회관 6간담회의실
자료집 등	5/6(수)	「금주의 서평」 제2026-17호(통권 제776호) 발간	국회도서관	
	5/7(목)	「금주의 World Law」 제2026-17호(통권 제17호) 발간		
	5/7(목)	「금주의 보고서」 제2026-16호(통권 제48호)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2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4/27(월)	「최신외국정책정보」 제2026-5호(통권 제29호)	국회도서관	
	4/28(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6-8호(통권 제296호)		
	4/29(수)	「금주의 서평」 제2026-16호(통권 제775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4/27(월)	ESG	2026년 주목해야 하는 ESG 규제 (8)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4/28(화)	건설/부동산	월간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4/28(화)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2026년 정기주주총회 리뷰] 제3호 : 이사 선임과 보수 승인 -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 증가 및 임원 보수 구조의 변화
4/29(수)	소송	재판소원 제도 도입 3. 해외 재판소원 인용 사례
4/29(수)	방송통신 (TMT)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동향 및 시사점
4/29(수)	건설/부동산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이후 적법하게 이를 철회한 사실이 없다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무효확인 청구를 방어한 사례
4/29(수)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4/30(목)	금융	월간 기업 · 금융분쟁 뉴스레터
4/30(목)	국방획득/방위 산업	방산업체를 대리하여 함정 기본설계 계약에 부과된 지체상금의 전부 면제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변경계약 체결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추가 인정받은 사례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